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61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전자우편 포함)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2023년 08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① 대상(2개 기업)

사업자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처분사항
(주)비*****브 (이*엽)	633-8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과태료(폐업 미신고)
I**R (강*혁)	116-72-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원당길 27	과태료(폐업 미신고)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 미신고
- 근거법령 : 위치정보법 제43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 예정처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 : 300만원)
- ※ 근거 :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5

③ 의견제출

- 제출기한 : 8월 24일(목)
 - ※ 지정된 의견제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행정처분 담당자 : 이병수 주무관
 - 연락처 : 02-2110-1526
 - 팩 스 : 02-2110-0140
 - 전자우편 : rmang202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④ 안내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거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위치정보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따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